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 토 보 고 서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4.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제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청년인증기업,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최대 5천만원 융자 특례보증 지원

○ 출연개요

- 출연금액 : 2,100백만원
- 출연기관 : (재)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4,800	3,600	2,000	2,000	2,000	2,100	3,100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소상공인	759	21,625	746	19,725	847	20,931	861	21,955

5. 향후일정

○ 2026. 12. : 2027년도 예산 편성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1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음.

○ 출연금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20억 원, 청년인증기업·창업기업인 소상공인 지원에 1억 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출연금의 10배인 총 210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조성하여 소상공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5년에는 관내 소상공인 861개 업체에 총 219억 5,5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금년에는 특례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을 31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2027년도에는 2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인 만큼, 향후 보증 수요와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⑤항 생략

☑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